

# 예 산 총 칙

2021년도 추경 3 회

제 1 조 2021년도 세입·세출 예산총액 및 회계별로 일시 차입할 수 있는 최고액은 다음과 같다.

(단위:천원)

구 분	세입·세출예산총액	일시차입한도액
합 계	915,355,263	27,460,658
일반회계	808,054,831	24,241,645
특별회계	107,300,432	3,219,013
공기업특별회계	80,234,620	2,407,039
공영개발특별회계	22,286,084	668,583
상수도사업특별회계	28,631,340	858,940
하수도사업특별회계	29,317,196	879,516
기타특별회계	27,065,812	811,974
의료급여특별회계	380,096	11,403
저소득주민생활안정자금특별회계	18,334	550
새마을주민소득지원기금특별회계	155	5
학교급식지원센터특별회계	5,346,349	160,390
농공산업단지특별회계	2,894,014	86,820
균형발전특별회계	983,810	29,514
주차장운영특별회계	4,350,000	130,500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임시특별회계	205,056	6,152
수질개선특별회계	11,345,341	340,360
지하수관리특별회계	1,442,657	43,280
에스디해바라기태양광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	11,200	336
삼익악기태양광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	50,700	1,521
소수태양광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	8,100	243
음성एको파크연료전지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	30,000	900

제 2 조 세입·세출 예산의 명세는 별첨 "세입·세출 예산"과 같다.

제 3 조 계속비사업은 별첨 "계속비사업조서"와 같다.

제 4 조 명시이월사업은 별첨 "명시이월사업조서"와 같다.

제 5 조 일반회계 예비비는 14,002,920천원으로 한다.

제 6 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공기업 특별회계 포함) 지방채차입 한도액은 30,600,000천원으로 한다.

제 7 조 지방재정법 제47조 제1항 단서규정에 의한 기준인건비에 포함된 경비 및 동일 부서에서 동일 부문에 있는 정책사업 간의 경비는 상호 이용할 수 있다.

제 8 조 (재원구분) 의 존재원에 대한 약어를 다음과 같이 표기한다.

국고보조금(국),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균), 기금(기), 도비보조금(도), 특별교부세(특), 시군조정교부금등(조), 지방채(채)